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5.7.29.>

임산부 · 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1. 임산부

가. 임신 28주까지: 4주마다 1회

나.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: 2주마다 1회

다. 임신 37주 이후: 1주마다 1회

라.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임산부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, 만 35세 이상인 경우,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2. 영유아

가. 신생아: 수시

나. 영유아

1) 출생 후 1년 이내: 1개월마다 1회

2)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: 6개월마다 1회

3. 미숙아등

가.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

나.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

다.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